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 개요

□ 제도 개요(세부내용 별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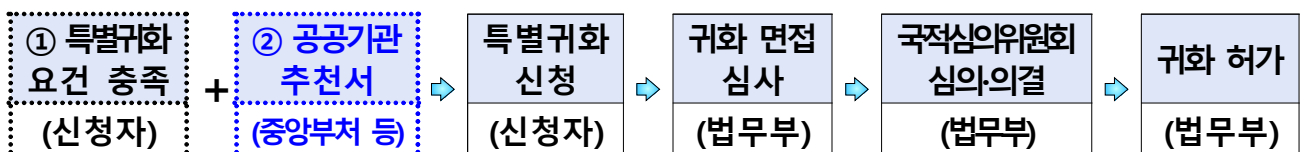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 특별귀화 분야(10개) : 1. 저명인사, 2. 학술연구 우수, 3. 문화예술 우수, 4. 스포츠 우수, 5. 국내외 기업 등 우수 근무자, 6. 신산업 및 첨단분야 근무, 7. 신산업·첨단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 8. 지재권 보유, 9. 전문기술 보유, 10. 국제기구 근무

□ 신청요건 및 국적취득 절차

- ①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②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특별귀화 국적취득 절차>



□ 중기부 추천 분야

○ 중기부는 특별귀화 분야(10개) 중 아래의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발급 예정

* 기업지원 부처로서 중기부가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외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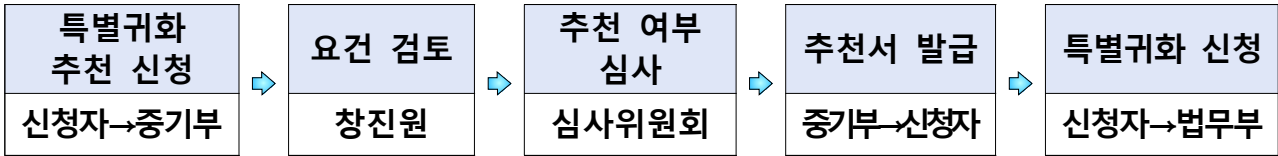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5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우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1인당 GN 2배 (단, 외국국적 동포는 1.5배) 이상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우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 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 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실적입증 서류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 국민 30명 이상 고용 하고 있는 사람	실적입증 서류
6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 신소재분야, 정보기술(IT), 이비즈니스(e-business),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 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1인당 GN 2배 (단, 외국국적 동포는 1.5배) 이상
7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u>원천기술</u> 보유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없음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 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없음

□ 추천 절차(중기부)

- 추천 신청을 받아 요건검토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서 발급

<중기부의 특별귀화 추천 절차>



2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 자격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제출 서류 : 별첨의 제출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 서류 리스트>

제출 서류	비고
①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반 서류	제출 언어는 각 증명서 양식에 따름
②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
③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한국어 또는 영어 양식 중 선택하여 제출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
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 : 포춘지 조회(fortune.com/ranking/global500/)

3

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

□ 심사 절차

① 요건검토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기본요건 미충족 또는 제출된 자료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위자료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발표평가

-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부득이한 경우 영상 참여 허용) 하여 특별귀화 추천의 타당성 등을 직접 발표
- 발표시간 20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내외

③ 추천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종합 검토하여 의결

□ 심사 기준

- 신청자의 우수성 및 국익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추천 심사 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1. 기본적 자질·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전공의 우수성 ■ 전문역량·성과(자격, 수상, 논문·특허 등) 	20
2. 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의 수준·기간·난이도 ■ 경력상의 주요 성과·업적 	20
3. 현 소속기업 내 역할·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지위·책임 수준 ■ 기업 내 주요 성과 	25
4.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 계획의 구체성 ■ 실현 가능성(역량·자원·네트워크 등) 	25
5. 국내 정착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거주 계획, 가족·커뮤니티 정착 의지, 한국어 능력 등 	10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년 2월 11일부터 수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https://airtable.com/appkd63wQDUOCZTXj/pagM7eKmKT2LH59XL/for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특별귀화 대상자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 중 유의사항
 - 신청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대리 발표 불가),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추천 후 유의사항
 - 중기부의 특별귀화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여 특별귀화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특별귀화 추천서를 받은 후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을 하고, 법무부 최종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귀화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 이후라도 특별귀화 기본요건 미충족,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처

(접수 문의) Global Startup Center

- 이메일 : startup.korea.visa@gmail.com
- 전화 : +82-02-3440-7346

(기타 문의) 창업진흥원

- 이메일 : yjee@kised.or.kr